#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# 심 사 보 고 서

2024년 11월 20일
자치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11월 08일 포항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2일

다. 상정일자

❍ 제319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•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(2024. 11. 20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조현미 재정관리과장)

### 가. 개정이유

❍ 상위법령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으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·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인 재산세 추가 감면 조문을 신설하여 기업투자 유치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❍ 일몰이 도래한 감면 조문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 및 서민생활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,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❍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함(안 제2조)

- “2024년 12월 31일까지”를 “2027년 12월 31일까지”로 변경

❍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함(안 제4조)

- “2023년 12월 31일까지”를 “2026년 12월 31일까지”로 변경

❍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(안 제9조)

- “입주승인이 취소된”을 “입주계약이 해지된”으로 조문 변경

❍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(안 제9조의2)

-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또는 수도권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이전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경감율을 100분의 50으로 함

❍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(안 제11조)

- “자동이체”를 “자동납부”로 변경

❍ ‘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’에 따른 조문 정비

### 다. 관계법령

❍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40조

❍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80조의2 및 제92조의2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박종율)

❍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,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**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**되며, 상위법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 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## 5. 토론의 요지 : 없 음

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